

**●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 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0.11.24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사업성격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7.11.14, 1998.11.9>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83호, 1989.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1989.12.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1991.7.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1997.11.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1998.11.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00.11.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